

문화재위원회 약사 (文化財委員會 略史)

鄭 在 鏞

〈文化財管理局 文化財企劃官〉

우리나라가 문화재(文化財)를 조사연구(調查研究)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고증학이 들어와서 추사(秋史) 김정희선생(金正喜先生)이 북한산과 황초령(黃草嶺)의 진흥왕순수비(眞興王巡狩碑)를 조사연구(調查研究)하여 발행한 금석과안록(金石過眼錄)의 보고서등(報告書等)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¹⁾

그리고 문화재(文化財)를 관리하는 근대적 법령이 최초로 제정된 것은 융희(隆熙) 4년(1910) 4월 23일 학부령(學部令) 第23號로 제정(制定) 공포(公布)된 「향교재산관리규정(鄉校財産管理規程)」이라 할 수 있으며²⁾ 최초의 박물관(博物館)으로 1908년에 창경궁내(昌慶宮內)에 이왕가박물관(李王家博物館)이 개설(開設)되었다.³⁾

그후 일제하(日帝下)에서 1911년 9월 1일부터 시행(施行)된 「사찰령(寺刹令)」이 제정되었다.⁴⁾ 그러나 문화재(文化財)를 본격적으로 보존(保存)하고 규제하는 법령은 1916년 7월에 제정(制定) 시행된 「고적급유물보존규칙(古蹟及遺物保存規則)」이었다. 이 고적급유물보존규칙(古蹟及遺物保存規則)에 의하여 1916년 7월 총훈(總訓) 第29號로 제정된 「고적조사위원회규정(古蹟調查委員會規程)」에 의하여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에 고적조사위원회(古蹟調查委員會)를 두고 고적(古蹟)과 유물(遺物) 및 명승(名勝)의 조사보존(調查保存)에 대한 사항을 심사(審査)하게 하였다.

이때 이 고적조사위원회(古蹟調查委員會) 위원장(委員長)은 정무총감(政務總監)이었다.⁵⁾ 그 후 1932년 「조선보물고적명승(朝鮮寶物古蹟名勝)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보존회(保存會)」 관제(官制)가 제정되고⁶⁾ 이어 「고적급유물보존규칙(古蹟及遺物保存規則)」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1933년 8월 9일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어 동년(同年) 12월 5일에 조선 총독부령 제36호로 조선총독부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朝鮮總督府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會) 시행규칙(施行規則)과 조선총독부 훈령 제43호로 상기 보존회의 의사규칙 등이 발표되면서 동법시행규칙부칙(同法施行規則附則)에 의하여 고적급유물보존규칙(古蹟及遺物保存規則)은 폐지되었다.⁷⁾ 그리하여 보물(寶物) 고적(古蹟) 명승(名勝)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의 지정 해제 및 보존(保

1) 정재훈 : 「우리나라의 문화재」 문화재보존관리의 연혁 p.574. 문화재관리국 刊 1970.

2) 吳世卓: 文化財保護法 研究 p.54. 단국대학교

3) 정재훈 : 「우리나라의 문화재」 문화재보존관리 연혁 p.575. 문화재관리국 刊 1970.

4) 吳世卓: 文化財保護法 研究 p.57. 단국대학교

5) 吳世卓: 文化財保護法 研究 p.45. 단국대학교

6) 정재훈 : 「우리나라의 문화재」 문화재 보존관리 연혁 p.576. 문화재관리국 刊 1970.

7) “한국의 자연” 한국의 자연보존과 문화재 보호법 p.44. 문화재관리국 刊 1970.

存)에 필요한 사항은 「조선총독부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朝鮮總督府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會)」에 자문하여 시행하였다. 이 보존위원회(保存委員會)는 第1部와 第2部로 구성(構成)되었는데 第1部에서 보물(寶物)과 고적(古蹟)을, 第2部에서 명승(名勝)과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을 분장하였다. 일제(日帝) 식민지시대(植民地時代)의 문화관리업무(文化管理業務)는 총독부 학무국이 관장하고 일선(一線) 관리기관은 경찰서장이었다.

그리고 박물관(博物館)의 설치(設置)를 보면 1915年 12月 1日 경북궁내(景福宮內)에 조선총독부박물관(朝鮮總督府博物館)을 개설(開設)하고 1929년에는 경주고적보존회(慶州古蹟保存會)가 운영하던 신라문화유물 전시관을 총독부 박물관 경주분관(慶州分館)으로 하였고 1939년에는 부여고적 보존회가 관리하던 「백제관(百濟館)」을 총독부박물관 부여분관(扶餘分館)으로 하였다. 그리고 개성과 평양에 부립박물관이 개설되고 공주(公州)는 1940年 재단법인 공주사적현창회(公州史蹟顯彰會)가 유물전시관을 개관하였다. 전국에 있는 문화재의 지정을 보면 1916년에 제정된 “고적급유물보존규칙(古蹟及遺物保存規則)”⁸⁾으로 등록(登錄)된 문화재(文化財)는 385점(點)이었으며 1933年 제정된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에 의하여 재분류되어 지정된 문화재(文化財)는 총 242점이고 그 중에 보물이 208점이었다.⁸⁾ 그리고 1916년부터 1924년까지 매년(每年) 「고적조사보고(古蹟調查報告)」 또는 「특별보고서(特別報告書)」를 간행(刊行)하였으며 1915년부터 1933년까지 20年間 사업으로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를 간행(刊行)하였다. 이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는 초기 5권을 제외하고는 해설도 없는 사진첩에 불과한 것이었다.

명승이나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의 보존(保存)에 있어서는 1943년까지 제7차의 보존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지정된 것은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145점, 고적(古蹟) 및 명승(名勝) 4점, 명승(名勝) 및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2점 천연보호구역(天然保護區域) 1점 합계 152점이었다.⁹⁾

일제식민지시대(日帝植民地時代)의 한국에 대한 문화정책(文化政策)은 한국 문화재(文化財)의 수탈, 한국어 및 문자의 사용금지, 한국역사의 왜곡 등 우리 민족문화를 말살하려는 식민지 정책의 일관성 위에 있었다.

당시 일본(日本)에는 「국보보존법(國寶保存法)」이 있어 일본(日本)의 문화재(文化財)는 국보(國寶)로 지정되었으나 한국(韓國)의 문화재(文化財)는 국보(國寶)가 될 수 없었으며 고적(古蹟)의 지정보존(指定保存)에 있어서도 우리민족의 위대한 기상이나 역사발전의 정신(精神)이 깃든 한산대첩지나 행주대첩지 같은 것은 고적(古蹟) 축에 끼일 수도 없었다.

임진왜란의 유적 중에 일본군이 쌓은 왜성(倭城)들은 중요(重要)한 고적(古蹟)으로 지정(指定) 보호되었던 것이다. 심지어 1926년에 본격적으로 학술발굴(學術發掘)을 한 경주서봉총(慶州瑞鳳塚) (발굴자 小泉顯夫)은 금관등(金冠等) 수천점의 유물이 출토되고 명문(銘文)도 있었으나 발굴보고서(發掘報告書)도 쓰지 않고 말았다.¹⁰⁾ 이는 합법적(合法的) 도굴이었다. 일본(日本)에서 왕릉(王陵)을 발굴하고 보고서도 안낸 이런 일이 있었으면 발굴자(發掘者)는 살아남지를 못했을 것이다.

1910年 우리는 국권(國權)을 상실하여 1945年 8月 15日까지 우리민족문화 유산을 우리 손으로 조사(調査) 연구(研究)하여 보존(保存) 선양하지 못하고 일제식민지(日帝植民地) 정책

8) 吳世卓: 文化財保護研究 p.63. 註 단국대학교

9) “한국의 자연” 한국의 자연 보존과 문화재 보호법 p.44. 문화재관리국 刊 1970.

10) 정재훈, “文化財” 第11號, p. 22. 韓國 遺蹟發掘年表 文化財管理局 刊 1977.

(政策)의 골레 속에서 수탈당하였던 것이니, 역사(歷史)의 한(恨)이 되었다.

1945年 8月 15日 해방이 되었으나 문화재보존(文化財保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시기까지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은 제헌헌법(制憲憲法) 第100조규정(條規定)에 의하여 그 효력을 유지시켰다.

그리하여 1952年 12月 19日 김법린(金法麟) 문교부장관(文敎部長官)에 의하여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임시보존위원회(國寶古蹟名勝天然記念物臨時保存委員會)」가 우리 정부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되었다. 당시 구성 이유는 6.25전란에 파괴된 문화재(文化財)를 긴급히 보수(補修)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보존회(保存會) 구성은 第1부에 20名, 第2부에 13名의 위원(委員)이 위촉되었다. (명단별첨) 그후 1955年 6月 28日 이선근(李瑄根) 문교부장관(文敎部長官)에 의하여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國寶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會)」가 정식으로 발족되면서 임시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임시위원회는 전시후의 사정으로 별 활동을 못하였던 것인데 전시에 파괴된 문화재(文化財)의 복구와 문화재(文化財)의 조사(調査) 연구(研究) 및 지정 해제의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당시 위원으로 위촉된 내용은 第1부에 12名 第2부에 8名이 위촉되고 보존회의장(保存會議長)은 고희동선생(高羲東先生)이 선출되었다. (위원(委員)명단 별첨)

이 보존위원회(保存委員會)가 심의하여 지정(指定)한 1955年 6月 30日 현재 문화재(文化財)를 보면 다음과 같다, 남한(南韓)에는 국보(國寶) 367점(點), 고적(古蹟) 106점(點), 고적급명승(古蹟及名勝) 3점(點),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116점(點), 소계(小計) 592점(點)이었고 북한(北韓)은 국보(國寶) 52점(點), 고적(古蹟) 39점(點), 고적급명승(古蹟及名勝) 1점(點), 명승급천연기념물(名勝及天然記念物) 2점(點),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30점(點), 소계(小計) 114점(點)으로 남북한(南北韓) 모두 합계(合計)는 716점(點)이었다. 일제(日帝) 때 보물(寶物)로 지정(指定)한 문화재(文化財)를 격을 높여서 일괄 국보(國寶)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6.25전란으로 파괴된 문화재는 1955年 6月 30日 현재로 조사된 내용을 보면 남한(南韓)의 지정 문화재(指定文化財)는 완전 파괴 멸실된 것이 19점(點), 중파(中破)된 것이 33점(點), 소파(小破)된 것이 36점(點), 계(計) 88점(點)에 이르렀고 지정(指定)되지 않은 문화재(文化財) 중 파괴된 것은 전파(全破)가 57점(點), 중파(中破)가 48점(點), 소파(小破)가 22점(點), 계(計) 127점(點)이었다. 지정된 것과 되지 않은 문화재를 모두 합하면 전파(全破)가 76점(點), 중파(中破)가 81점(點), 소파(小破)가 58점(點)으로 모두 합한 총계(總計)가 215점(點)이었다. (보존위원회(保存委員會) 第1次 총회(總會) 회의안건(會義案件) 보고내용(報告內容) 각도별(各道別) 피해사항 집계표 별첨)

이를 보면 6.25 전란으로 얼마나 많은 문화재(文化財)가 피해를 입었던 것인가를 알 수 있다.

1955年 11月 4日 문교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보존위원회(保存委員會) 第2次 총회에서는 한국(韓國) 최초의 문화재보호기간(文化財愛護期間)이 정하여 지고 또 내무부치안국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보 제164호로 지정되었던 삼전도(三田渡) 청태종공덕비(淸太宗功德碑)가 치욕의 역사물이란 이유로 지정해제되어 땅속에 매몰되게 되었다. (1955年 11월 4일 보존회(保存會) 회의록(會義錄))

1956年 11月 24日 국보(國寶) 第67號 강진 무위사 극락전의 보수와 벽화보존의 현상변경이 심의되어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고 1956年 9月 19日 미국무성(美國務省)에서 파견된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동양부장(東洋部長) Alam Priest와 보스턴 미술관 동양부장 Robert

Paue와 국립박물관 측이 합동으로 선정한 해외전시 문화재(文化財) 품목(品目)이 확정되었다.

1957年 4月 23日 문교부차관실(文敎部次官室)에서 보존위원회(保存委員會) 第10次 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때 일본(日本)에 유출(流出)된 우리나라 문화재(文化財)의 반환 및 배상요구 조건이 심의되었다.

1957年 5月 31日 보존위원회(保存委員會) 第11次 총회에서는 문화재(文化財) 보존(保存)에 대한 법규제정(法規制定)을 정부(政府)에 건의하였다. 이어 동년(同年) 8月 9日 第12次 총회에서는 고의동(高義東) 의장(議長)의 사임으로 정태현(鄭台鉉) 위원(委員)을 의장(議長)으로 선출하고 第 1부장(部長)에 김상기(金庠基) 위원(委員)을 第 2부장(部長)에 박동길(朴東吉) 위원(委員)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황수영(黃壽永) 위원(委員)이 일본(日本)에 유출(流出)된 문화재(文化財)를 조사(調査)하여 보고(報告)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수탈해 간 문화재중(文化財中) 일본(日本) 국보(國寶)로 지정(指定)된 것이 12점(點)
(주로 금속제품)
 2. 중요문화재(重要文化財) 미술품(美術品)으로 지정(指定)된 것이 23점(點)
 3. 권력으로 수탈해 간 것이 882점(點)
 4. 동경문과대학(東京文科大學) 소장품 111점(點)(주로 와전(瓦塼))
 5. 동경공과대학(東京工科大學) 소장품 328점(點)(주로 와전(瓦塼))
 6. 동경미술학교(東京美術學校) 소장품 57점(點)(주로 와전(瓦塼))
 7. 경도제대(京都帝大) 소장품 76점(點)주로 와전(瓦塼))
 8. 천리대학(天理大學) 소장품 1점(點)(회화)
 9. 小倉氏 소장품 270여점
 10. 池田次郎 소장품 240점(點)
 11. 동경국립박물관(東京國立博物館) 소장품 1,500여점
 12. 기타 개인 소장품 300여점
- 총계 3,800여점

1957年 11月 15日 第14次 총회에서는 문화재전문위원(文化財傳門委員) 삼인(三人)을 상임으로 두기를 정부에 건의하였다. 그리고 1958年 3月 17日 第17次 총회에서는 「국보도록(國寶圖錄)」 발간 편찬위원회 선정건과 경주석굴암보수(慶州石窟庵補修)의 대책을 심의하였다.

1958年 5月 9日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에서 제1부소위원회(第一部小委員會) 第 3차회의(次會議)가 열려 문화재보호법안(文化財保護法案) 심의 방침을 토의하고 문화재보수업자(文化財補修業者) 6人を 선정하여 58年 7月 8日 제18차 총회에서 심의통과되었다.

당시 선정된 보수기술자(補修技術者) 임배근(林培根) 조원재(趙元載) 박기섭(朴基燮) 양철수(梁徹洙) 정복영(鄭福永) 임덕창(林德昌)이었다.

그간에 상당히 문화재(文化財)가 조사(調査) 지정(指定)되고 보수(補修)되었다.

1960年 4·19가 일어나 정부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60年 11月 10日은 국무원령(國務院令) 第92號로 문화재보존위원회규정(文化財保存委員會規定)이 공포(公布)되었다. (문화재보존위원회규정(文化財保存委員會規定) 별표참조)

이 법(法)은 1933년에 제정되어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의 법규(法規)를 보완한 것이며 처음으로 문화재(文化財)의 범주에 연극 음악 무용 미술 공예 민속 등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의 보존(保存)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까지 第1部 국보고적(國寶古蹟) 第2部 명승천연기념물(名勝天然記念物)로 되어 있던 위원회(委員會) 구성(構成)을 제1분과(第一分科) 국보(國寶), 고적(古蹟), 제2분과(第二分科) 명승(名勝),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제3분과(第三分科) 연극 음악 무용 공예 기술 민속 등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로 확대한 것이다.

이 문화재보존위원회규정(文化財保存委員會規定) 第1條에 보면 문화재보존위원회(文化財保存委員會)는 문교부장관(文敎部長官)의 자문기관이며 第3條에 심의(審議)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第2條에 명시된 위원회(委員會)의 구성은 위원(委員) 40인이내로 하고 위원장(委員長) 1인과 부위원장(副委員長) 2인을 두며 위원(委員)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다.

당시 문화재보존위원회(文化財保存委員會)의 위원장(委員長)은 참의원(參議員)이었던 고의동선생(高義東先生)이고 부위원장(副委員長)은 김재원선생(金載元先生)이었다.

이때 위촉된 위원(委員)은 제1분과(第1分科)에 17명 제2분과(第2分科)에 9명 제3분과(第3分科)에 16명인데 제1분과(第1分科)의 위원(委員) 2인이 제3분과(第3分科)에 겸임하고 있었다.(위원 명단 별첨)

민주당시대의 이 위원회(委員會)는 1961년 5.16 혁명이 일어나므로 하여 몇번의 회의를 하고 석굴암 보수 등 사업을 자문한 외에 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5.16이후인 1961년 10월 2일 당시 구황실재산관리사무총국(舊皇室財産管理事務總局)을 개편하여 법률(法律) 第743號 및 각령(閣令) 第181號로 문교부(文敎部) 외국(外局)으로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을 설치(設置)하였다.

이때까지 문교부(文敎部) 문화국(文化局)에서 관장하던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 업무가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으로 이관되었다. 그리고 1962년 1월 10일 법률(法律) 第961號로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이 제정공포되었다.

이와 동시에 제정후 29년간(年間)이나 한국의 문화재(文化財)를 관리해 오던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이 폐지되었다.

우리 문화(文化) 유산(遺産)의 관리사(管理史)에 있어 문화재관리국(文化財館理局)의 설치(設置)와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의 제정(制定)은 가장 큰 업적의 하나였다.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 第3條에는 문교부장관(文敎部長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를 설치(設置)하도록 하고 第4條에 장관의 자문내용을 의결(議決)하는 의결(議決) 사항(事項)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1. 주요 유형문화재(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기념물(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의 지정과 해제
2. 전호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문화재의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과 해제
3. 지정문화재의 관리 또는 중요한 수리 및 복구명령
4. 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또는 수출이나 국외반출의 허가
5. 지정문화재의 환경 보전을 위한 제한 금지 또는 필요한 시설의 명령
6. 지정 문화재의 매수
7. 매장문화재의 조사를 위한 발굴의 시행
8. 기타 지정문화재의 보호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한

다고 인정되는 사항

9.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그리고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大統領令)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였다.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 第5條에는 각분과위원회(各分科委員會)의 분장을 규정하였다.

第1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는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와 기념물중(記念物中) 사적(史蹟)에 관한 사항

第2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는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와 민속자료(民俗資料)에 관한 사항

第3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는 명승(名勝)과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에 관한 사항

문화재위원회규정(文化財委員會規定)은 1962年 3月 27日 각령(閣令) 제577호로 제정 공포되면서 국무령 제92호로 제정되었던, 문화재위원회규정(文化財委員會規定)이 폐지되었다. (문화재위원회규정(文化財委員會規定) 별첨)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의 구성(構成)을 보면 위원(委員)은 30인이내로 하고 위원(委員)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되 임기는 2년으로 하였다.

1962년에 처음으로 문화재위원(文化財委員)으로 위촉된 위원(委員)은 第1분과(分科) 8명과 第2분과(分科) 4명 第3분과(分科) 5명이었다.(위원명단 별첨) 당시 문화재위원장(文化財委員長)은 김상기(金庠基) 선생(先生)이며 부위원장(副委員長)은 임잠상(任暫宰), 박만규선생(朴萬奎先生)이었다.

1962年 이후는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의 회의록이 이미 「문화재(文化財)」 「고고미술(考古美術)」 「미술자료(美術資料)」 등(等)에 상세히 수록되어 있고 지면의 한정도 있어 여기서 일일이 언급하지 않고 그간 위원회(委員會)의 업무와 변천 사항만을 언급한다. 다음에 상세한 문화재관리사(文化財管理史)나 문화재위원회사(文化財委員會史)를 집필할 기회가 있을 것이므로 훗날로 미루워둔다.

다만 1962年 이전의 사항은 회의록도 게재된 것이 없어 필자가 그간에 조사한 바를 약간 자세히 언급하였다.

1966년에 기억할만한 일은 종묘(宗廟)경내에다 국립극장(國立劇場)을 건립(建立)하려는 계획(計劃)이 있어 당시 문화재위원장(文化財委員長)인 김상기선생(金庠基先生)을 위시한 모든 위원(委員)들이 사적(史蹟)을 파괴해서는 안된다고 대통령(大統領)에게 건백서(建白書)를 올려서 저지한 일이있었다.

1968年 7月 24日 법률 제2041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이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 외국(外局)으로 개편되면서 문화재위원회규정(文化財委員會規定)이 개정되고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도 개편이 있었다.

1969年 1月 8日 대통령령(大統領令) 제3714號로 개정된 문화재위원회규정(文化財委員會規定)은 문교부장관(文敎部長官)을 문화재관리국장(文化財管理局長)으로 하고, 문화재위원(文化財委員)을 문화재관리국장(文化財管理局長)의 제청에 의하여 장관(長官)이 위촉하던 것을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이 직접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委員)의 임기는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위원장(委員長)과 부위원장(副委員長)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다. 그리고 부칙경과조치로 「이 영 시행당시의 위원회위원 및 전문위원의 임기는 그 위촉 당시에 정하여진 임기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그 임기를 종료한다」 라고 명시하여 문화재위원(文化財委員) 및 전문위원(專門委員)의 전면 개편을 단행하였다.

당시 정부(政府) 직제개편으로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이 문교부(文敎部)에서 문화공

보부(文化公報部)로 이관되는 데 대하여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가 반대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정부직제 개편에 따라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 업무의 일선기관은 교육위원회(教育委員會)에서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시도지사(市道知事))로 이관되었다.

이로 인하여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의 기동성이나 지방비(地方費) 투입의 재원확보가 용이하여 지고 강력한 정부(政府)의 문화재정책(文化財政策)이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에 신속히 반영되게 되었다.

그러나 일면(一面) 문화재지역(文化財地域)의 개발이 촉진된 반면 보존(保存)의 문제점이 대두되기도 했다.

1969년에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의 운영이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에서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 문화국(文化局)으로 일시 이관되었다가 1970년에 다시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으로 환원되기도 했다.

1969년 1월 8일 문화재위원회규정(文化財委員會規定)의 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委員)은 第1분과(分科) 10名 第2분과(分科) 10名, 第3분과(分科) 7名 계 27名이었으며 문화재위원회 위원장(文化財委員會委員長)은 이선근박사(李瑄根博士)이고 부위원장(副委員長)은 김상기(金庠基) 이민재(李敏載) 박사(博士)이었다.

그리고 第1분과위원장(分科委員長)에 김상기박사(金庠基博士) 第2분과위원장(分科委員長)에 임잠재박사(任暫宰博士) 第3분과위원장(分科委員長)에 이민재박사(李敏載博士)이었다.(문화재위원명단(文化財委員名單) 별첨)

1970년 8월 10일 법률(法律) 第2233호로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이 대폭 개정되었다. 이때 중요개정 내용은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를 지정함에 있어 반드시 그 보유자(所有者)를 인정하는 것과, 문화재(文化財)의 국외(國外) 수출을 금지하고 동산문화재(動產文化財)의 등록제도와 지방문화재 지정제도 및 문화재 매매업자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전란이나 비상시의 문화재 보호규정을 명시한 것 등이었다.

이때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 第4條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의 의결사항(議決事項)을 심의사항(審議事項)으로 개정하였다. 이는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가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 第3條에 의하여 장관(長官)의 자문기관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문사항에 대한 의결(議決)인 바 법체제상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가 의결기관이 아니므로 심의(審議)라는 표현이 합당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이 있어 이를 개정하였다.

1969년 1월 21일부터 1985년 2월 25일까지는 2년에 한번씩 8회에 걸쳐 위원(委員) 위촉이 있었다.(문화재위원(文化財委員) 명단 참조)

그간에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의 일부(一部) 개정이 있었으나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1982년 12월 31일 법률 제 3644호로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 전문 개정(改正)되면서 동법(同法) 第3條에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 설치(設置) 근거와 아울러 第4條에 있던 심의사항(審議事項)을 第3條 第1項에 합하고 第5條에 있던 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에 대해서 설치(設置)근거만 第3條 2項에 명시하고 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 업무 분장은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 규정(規定)에 명시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1983년 5월 30일 대통령령 제 11139호로 문화재위원회규정(文化財委員會規定)을 개정하면서 제5조 2에 분과위원회설치(分科委員會設置)와 업무분장내용을 신설하게 되었다.

이는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 개정시에 법제처에서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에 분

과위원회설치(分科委員會設置) 근거만 명시하고 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의 업무분장은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 규정(規定)에 명시하는 것이 법 체제상 합당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1984年 12月 31日 법률 제 3787호로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이 또 개정되었다.

그리고 1984年 12月 31日 법률 제 3775호로 「박물관법(博物館法)」과 법률 3777호로 전통건조물보존법(傳統建造物保存法)이 새로 제정되었다.

전통건조물보존법(傳統建造物保存法)에 있어 동법(同法) 第3조의 지정해제와 동법(同法) 第4조 보호구역지정 및 동법(同法) 第7條 보존계획(保存計劃) 수립 등에 있어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의 자문을 받도록 명시하였다.

그리고 박물관법(博物館法)은 第6條 중요사항(重要事項)의 자문에 있어, 박물관(博物館)의 설치(設置) 운영(運營) 및 박물관 자료(資料)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였다.

1984年 12月の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 개정은 第69條에 있던 동산문화재(動產文化財)의 등록 규정을 폐지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1985年 4月 26日 대통령령 제11690호로 부득히 문화재위원회규정(文化財委員會規定)을 개정(改定)하게 되었다.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심의사항에 박물관법과 전통건조물보존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명시하고 제5조 2의 분과위원회 설치 등에 있어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 第3條 第2項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제1분과 위원회, 제2분과 위원회, 제3분과 위원회, 제4분과 위원회, 제5분과 위원회 및 박물관분과 위원회를 둔다로 개정하였다.

그리고 각분과위원회의 분장 내용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제1분과 위원회는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유형문화재 중 건조물 및 동조동향 제4호의 민속자료 중 가옥에 관한사항과 전통건조물보존법 제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대상 전통건조물 또는 전통건조물보존지구의 지정 및 해제와 전통건조물 보존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 대상 전통건조물 보호구역의 보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2분과 위원회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의 유형문화재(건조물 제외)에 관한 사항 제3분과 위원회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기념물 중 사적지에 관한 사항.

제4분과 위원회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무형문화재와 동조동향 제4호의 민속자료(가옥제외)에 관한 사항, 제5분과 위원회는 문화재 보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기념물(사적지제외)에 관한 사항.

박물관분과위원회는 박물관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설치 운영 및 박물관 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분과위원회가 많아지고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제9조 전문위원을 90人에서 120人으로 증가시켰다.

전통건조물보존법은 문화재관리국이 관장하는 업무지만 박물관법은 문화공보부 문화국이 관장하는 업무가 됨으로 각 분과위원회 간사를 문화공보부 장관은 문화공보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소관과 직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개정하였다.

문화재분과위원회(文化財分科委員會)의 증가에 따라 문화재위원(文化財委員)의 증원이 필요하여 제2조를 개정하여 30人이내이던 것을 50人 이내로 하고 제3조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였다.

문화재위원회의 3개분과를 5개 분과로 확대한 이유는 1985年 현재(現在) 지정문화재(指定

文化財)가 4,711점(點)에 이르고 보수(補修) 조사(調查) 발굴(發掘) 연구(研究) 보존(保存) 등의 업무가 대폭증가되어 1961年 3個 분과(分科)로 운영을 시작하던 때에 비하면 너무 많은 심의안건이 집적되었다.

1984年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가 심의한 안건(案件)이 모두 208건(件)에 이르렀는데 第1분과(分科)가 118건(件)을 第2분과(分科)가 31건(件)을 第3분과(分科)가 59건(件)을 심의한 것이었다. 第1분과(分科)는 한달에 두번씩 회의(會議)를 개최하여도 어려운 형편이었고 여기다가 전통건조물보존법의 대상인 많은 건물(建物)을 심의하게되면 第1분과(分科)만으로는 처리할 수 없으며 또 법상(法上) 민속자료(民俗資料)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가옥은 第2분과(分科)의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담당 위원회(委員會)에서 심의하여 왔기 때문에 第2분과(分科)에는 건조물(建造物)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위원(委員)이 없으며 또 건조물(建造物)을 음악 무용 연극 공예기술 등을 전문으로 하는 위원회(委員會)에서 심의하는 것도 불합리하였다. 第1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도 건축물(建築物)의 보수공사(補修工事)가 가장 많은데 건축(建築)을 전공한 위원(委員)은 2인밖에 없어서 전문적인 설계도(設計圖)의 검토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第1분과(分科)의 소관이 결국 3개분과(個分科)로 나누어진 결과가 되었다.

그러나 건축(建築) 보수(補修)에 벽화가 있거나 고분(古墳)인 사적(史蹟)에 벽화나 유물(遺物)이 출토(出土)되거나 하면 합동분과위원회(合同分科委員會)를 열어서 심의하여야 할 안건들이 생긴다.

이런 경우에는 관계분과와 합동회의(合同會議)를 개최할 계획(計劃)이다.

이번에 5개분과(個分科)로 나누어진 결과 분과별 심의 안건은 적어졌으며 전문분야의 위원(委員)이 여러 사람 참여하여 심의함으로 안건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은 높아진 셈이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당해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오랜 경험과 조사(調查) 등으로 그 분야에 깊은 관심이 있는 위원(委員)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하여, 조사(調查) 연구(研究)나 심의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1985年 4月 26日 개정된 문화위원회규정(文化委員會規定)에 의하여 1985年 5月 2日 위촉된 위원(委員)은 第1분과(分科) 7名 第2분과(分科) 9名 第3분과(分科) 7名 第4분과(分科) 8名 第5분과(分科) 8名 박물관분과(博物館分科) 7名이다. 박물관분과(博物館分科)는 第1 第2 第3분과(分科)의 위원(委員)들이 겸직하게 된 것이 많다.(위원(委員)명단 별첨)

1985년부터 문화재위원회위원장(文化財委員會委員長)은 주홍섭박사(奏弘燮博士)가 부위원장(副委員長)은 김철준(金錕竣) 이창복박사(李昌福 博士)가 선출되었으며 第1분과(分科)위원장(委員長)은 윤장섭박사(尹張燮博士) 第2분과(分科) 위원장(委員長)은 주홍섭박사(奏弘燮博士) 第3분과(分科) 위원장(委員長)은 김철준박사(金錕竣博士) 第4분과(分科)위원장(委員長)은 성경린선생(成慶麟先生) 第5분과(分科) 위원장(委員長)은 이창복(李昌福) 박사(博士)가 선출되었다.

1955년부터 1985년까지의 문화재(文化財) 전체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고의동(高義東)(1955) 정태현(鄭台鉉)(1957) 고의동(高義東)(1961) 김상기(金庠基)(1961~1968) 이선근(李瑄根)(1969~1980) 황수영(黃壽永)(1981) 이승녕(李崇寧)(1982) 이원용(李元龍)(1983~1984) 주홍섭(奏弘燮)(1985 현재(現在)) 선생(先生)이며 부위원장(副委員長)은 1962年 이후는 위원장(委員長)이 나오는 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 외(外)의 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 위원장(委員長)이 맡아 수행했다. 각분과(各分科)의 분과위원장(分科委員長)은 다음과 같다.

第1분과위원회위원장(分科委員會委員長)은 이홍식(李弘植)(1961~1968) 김상기(金庠基)(1969)

조명기(趙明基)(1971~1973) 이선근(李瑄根)(1973~1979) 김두중(金斗鍾)(1979~1980) 김원용(金元龍)(1981~1983) 주홍섭(奏弘燮)(1984) 윤장섭(尹張燮)(1985 현재(現在)) 선생(先生)이다.

第2분과위원회위원장(分科委員會委員長)은 임잠재(任暫宰)(1961~1973) 이선근(李瑄根)(1969) 양재연(梁在淵)(1970~1973) 성경린(成慶麟)(1973~1977) 예용해(芮庸海)(1977~1979) 성경린(成慶麟)(1981~1985 현재(現在)는 4분과(分科)가 됨) 선생(先生)이다.

第3분과(分科)위원회(委員會)위원장(委員長)은 박만규(朴萬奎)(1961~1968) 이민재(李敏載)(1969~1971) 박만규(朴萬奎)(1971~1977) 정문기(鄭文基)(1977~1981) 이승녕(李崇寧)(1982) 이창복(李昌福)(1983~1985 현재(現在)는 5분과(分科)가 됨)선생(先生)이다.

1952년부터 1985년까지 33년간(年間)에 문화재위원(文化財委員)으로 위촉되신 선생(先生)님들은 문화재(文化財) 보존(保存)에 헌신적인 공로가 크다.

이분들은 그 시대(時代)를 살아간 한국의 덕망 높고 학식 깊은 대표적 지성(知性)들이며 우리 민족문화유산(民族文化遺産)을 헌신적으로 지킨 파수병이다. 때로는 성급하게 내달리는 급진(急進)의 계획(計劃)을 저지하여 보존(保存)의 안전(安全)을 강구하게 하였다.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를 행정적(行政的)으로 보면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의 심의를 거쳐 행하는 귀속적 행정 행위이다.

그러나 보존(保存)과 개발(開發)이라는 마찰은 모든 분야에서 일어난다.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는 역사적(歷史的) 유산(遺産)이던 자연적(自然的) 유산(遺産)이든간에 그 보존(保存)의 마지막 보루이다. 국가(國家)는 이 보존(保存)의 보루를 잘 지켜주어야 한다.

그리고 위원(委員)들이 문화재(文化財) 하나 하나를 보는 그 체득된 깊이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 전문지식(專門知識)만 있다고 문화재(文化財)를 아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文化財)를 대하는 진실과 실수없는 안전성(安全性)이 필요한 것이다.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는 문화재(文化財)에 대하여 학문적 이론(理論)과 경험적 체득으로 심의를 통하여 안전성(安全性)을 부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부 록

1. 역대 문화재 위원명단
2. 역대 문화재위원(文化財委員) 규정(規定)
3. 6.25 때 문화재 피해 사항표(1955年 6月 30日 현재(現在))

국보(國寶) 고적(古蹟) 명승(名勝)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임시(臨時) 보존(保存) 위원회(委員會) 위원(委員) (1952年)

제1부 20명

성명	당	단	직공	직
金敬宗	국보고적	고고학	국립박물관장	
金鑾	"	수집가		
高麗玄	비	화	대한미술협회회장	
孫南聲	서	서		
李均相	전	지	서울 문리대 교수	
李相伯	장	적	"	
李均相	전	수	공과대학 교수	
趙明高	국보사찰		동국대학 교수	
李山鶴	국	보	신학문관 직원	
趙潤水	국	보	전 박물관 직원	
許增秀	국	보	문교부 차관	
林命理	국	보	문교부 문화국장	
趙錫晚	국	보	문교부 성인교육과장	
趙載植	국	보	거취지 여간국장	
中本水	"			
李鍾六	"			
吳宗理	국	보		
趙凡述	국	보		
趙相老	국	보		
李鍾德	국	보	문교부무직장	

제2부 13명

성명	당	단	직공	직
趙經千	명승천연기념물		임업	
金道敏	"		식물경비	서울사대
崔基仁	"		물물	"
姜永濟	"		동물	서울문리대
李敏載	"		식물	"
朴萬奎	"		식물	문교부
朴東吉	명승천연기념물		지원장	국립지질박물관연구소장
孫致武	"		"	서울 문리대
金道奉	"		계리	서울 어상교장
南泰純	"		동물	서울 문리대
許增秀	"		장외외교	문교부차관
林命理	"		상경	문교부문화국장
趙錫晚	"		문학	문교부 성인교육과장

국보(國補) 고적(古蹟) 명승(名勝) 천연기념물보존회(天然記念物保存會) 위원(委員) (1955年)

제1부 12명

성명	직	분	소속
金敬宗	고고학	학	국립 박물관장
金鑾	수집가	가	
高麗玄	미술	화	예술인 협회
孫南聲	고고학	학	거취지 박물관장
金鑾	사도	도	
李相伯	사학	학	서울 문리대 학장
李相伯	사학	학	서울 대학원장
李均相	진주학	학	서울공대 교수
李均相	고고학	학	서울대학 교수
李以植	사학	학	전희대학교 교수
黃壽永	고고학	학	한국농학주식회사

제2부 8명

성명	직	분	소속
崔基仁	물물	물	서울 사범대학 교수
趙福成	"	"	고려대학 교수
鄭允莊	"	"	성균관 대학 교수
李敏載	식물	물	서울 문리대 대학 교수
朴萬奎	"	"	문교부
朴東吉	지질·광물	광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孫致武	"	"	서울대학교 문리대 대학 교수
金道奉	계리	리	서울어과상업 고등학교장

문화재 보존위원회 위원명단(文化財保存委員會委員名單)

(가, 나, 다 순(順))

文化財保存委員會委員名單 (가, 나, 다 순)

分科別	姓名	原籍	現住所	職業	電話
第1分科	高載東	서울	東大門區泰基洞 151차 3	參院議	위원장
	金景承	"	城東區新堂洞 333차 6	弘益大學教授	
	金基昇	"	鍾路區積善洞 140	美術大學專任講師	
	金斗鍾	慶南	鍾路區明倫洞 3가 67차 17	淑大總長	
	金庠基	全北	鍾路區東崇洞 25	서울大文理大教授	부위원장
	金元龍	平北	鍾路區惠化洞	國立博物館學藝官	

分科別	姓名	原籍	現住所	職業	電話
第2分科	金載元	咸南	鍾路區共場洞 2차 20	國立博物館長	부위원장
	金鍾瑛	慶南	鍾路區東崇洞 187	서울大美大教授	
	金重業	平南	鍾路區東崇洞	建築家	⑤ 4 4 0 3
	徐廷德	慶北	城北區城北洞 195차 1	文教部文化局長	
	中爽鎬	慶北	西大門區忠正路 3가 129	國史編纂委員會事務局長	분과위원장
	柳洪烈	京畿	鍾路區惠化洞 9차 5	서울大文理大教授	
	李順石	서울	龍山區厚岩洞 27차 9	서울大美術大教授	③ 7 4 3 1
	李弘植	서울	鍾路區明倫洞 2가 21차 13	高麗大學校教授	
	張遇聖	京畿	鍾路區惠化洞 195	서울大美大教授	⑤ 6 4 5 5
	金鑿淵	서울	鍾路區惠化洞 4가 112	文化財蒐藏家	
	黃壽永	서울	城北區安岩洞 175차 8	東國大學校教授	
	金壽玉	平江	龍山區南營洞 127	中央地質礦物研究所長	③ 6 9 9 5
	金薰漢	咸南	麻浦區孔德洞 388차 36	梨大節大生物學科長	
	朴萬奎	全南	鍾路區清雲洞山 1차 23	國立科學館長	
	第3分科	孫致武	全南	龍山區南營洞 127	서울大文理大教授
鄭文基		全南	鍾路區內營洞 110	學術院會員	
鄭英吳		平北	鍾路區苑西洞 77차 49	서울大文理大副教授	
鄭昌熙		平北	鍾路區東崇洞 201	서울大文理大教授	
鄭台鉉		서울	城北區南安岩洞 132차 1	成均館大學校教授	⑤ 3 1 4 9 분과위원장
崔基哲		全北	鍾路區明倫洞 1가 27차 14	서울大師大教授	⑤ 1 0 3 9
金京鉉		平北	東大門區清涼里洞 209	韓國演劇學會事務局長	
金千憲		서울	城東區新堂洞 162차 39	國立國樂院講師	
朴憲鳳		慶南	鍾路區寬峽洞 197차 10	國樂藝術學校長	
石寅善		平南	城東區新堂洞 52차 28	同德女大副教授	
薛昌洙		慶南	西大門區新堂洞 68	參議	
李根成		서울	鍾路區社樓洞 304차 21	舞廳家	
李杜鉉		咸北	城東區新堂洞 304차 609	서울大專任講師	
李珠煥		서울	鍾路區唐珠洞 128	國立國樂院長	
李惠求		서울	鍾路區內營洞 24	서울大會大教授	
任哲宰	서울	城北區教岩洞 291차 57	서울大師大教授		
張師勛	慶北	西大門區佛光洞國民住宅91	慶熙大學校園教授		
張壽根	平北	城北區教岩洞 507차 42	京畿高校教師		
崔常壽	서울	城北區新堂洞 402차 1	京畿初級大學校教授	⑤ 8 9 6 8	
玄哲	서울	東大門區昌信洞 524	서울特別市文化委員	⑤ 3 8 6 8 분과위원장	
(李顯石)					
(金鑿淵)					

()는 他分科兼務

()는 타분과겸무(他分科兼務)

1962年 문화재위원회 위원(文化財委員會委員)

第1분과(分科)

김상기(金庠基) 이홍식(李弘植) 김두중(金斗鍾) 김중업(金重業) 황수영(黃壽永) 김재원(金載元)

김원용(金元龍) 이상백(李相佰)

第2분과(分科)

임철재(任哲宰) 이해구(李惠求) 석주선(石宙善) 김천흥(金千興)

第3분과(分科)

박만규(朴萬奎) 최기철(崔基哲) 손치무(孫致武) 정문기(鄭文基) 이민재(李敏載)

1963年~1965年 문화재위원(文化財委員)

第1분과(分科)

김상기(金庠基) 이홍식(李弘植) 김두중(金斗鍾) 김중업(金重業) 황수영(黃壽永) 김재원(金載元)
김원용(金元龍) 이상백(李相佰)

第2분과(分科)

김천홍(金千興) 석주선(石宙善) 성경린(成慶麟) 예용해(芮庸海) 이혜구(李惠求) 박헌봉(朴憲鳳)

第3분과(分科)

박만규(朴萬奎) 손치무(孫致武) 최기철(崔基哲) 이민재(李敏載) 정문기(鄭文基)

1966年~1968年 문화재위원(文化財委員)

第1분과(分科)

이홍식(李弘植) 김상기(金庠基) 김원용(金元龍) 김윤기(金允基) 정인국(鄭寅國) 조명기(趙明基)
최희순(崔熙淳) 배길기(裴吉基) 배 렴(裴 濂) 진홍섭(秦弘燮)

第2분과(分科)

임잠재(任暫宰) 김천홍(金千興) 석주선(石宙善) 성경린(成慶麟) 예용해(芮庸海) 박헌봉(朴憲鳳)
임동권(任東權) 홍현식(洪顯植)

第3분과(分科)

박만규(朴萬奎) 이민재(李敏載) 강영선(姜永善) 최기철(崔基哲) 손치무(孫致武) 원병오(元炳旸)

文化財 委員 委囑 現況

委 囑 期 間	第 1 分 科	第 2 分 科	第 3 分 科
1969. 1. 21~1971. 1. 20	金庠基, 李弘植, 孫寶基, 李弘燮, 洪以燮, 金允基, 金裕善	李瑄根, 金基錫, 朴憲鳳, 朴憲鳳, 金千興, 任贊宰, 任東權, 石宙善, 芮庸海	李敏載, 朴萬奎, 鄭文基, 崔基哲, 元炳旸, 李昌福, 李殷相
1971. 1. 21~1973. 1. 20	李瑄根, 趙明基, 崔熙淳, 鄭寅國, 李基白, 孫寶基, 李弘燮	梁在淵, 成慶麟, 任東權, 石宙善, 李杜鈺, 張師勛, 劉起龍	朴萬奎, 崔基哲, 元炳旸, 李昌福, 李殷相, 吳桂七, 金鳳洙
1973. 1. 22~1975. 1. 21	李瑄根, 金元龍, 李弘燮, 黃壽永, 崔熙淳, 鄭寅國, 任昌淳	成慶麟, 朴憲鳳, 任東權, 芮庸海, 金千興, 李杜鈺, 張師勛, 姜漢永	朴萬奎, 崔基哲, 元炳旸, 李昌福, 李殷相, 吳桂七, 金鳳洙, 金鳳均
1975. 1. 23~1977. 1. 22	李瑄根, 金元龍, 李弘燮, 黃壽永, 崔熙淳, 鄭寅國, 金鎔煥, 尹張燮, 鄭慶雲	成慶麟, 朴憲鳳, 任東權, 芮庸海, 金千興, 李杜鈺, 張師勛, 李春寧, 姜漢永	朴萬奎, 崔基哲, 元炳旸, 李昌福, 李殷相, 吳桂七, 金鳳洙, 金鳳均
1977. 1. 23~1979. 1. 22	李瑄根, 金元龍, 金斗鍾, 崔熙淳, 鄭慶雲	任東權, 芮庸海, 李杜鈺, 金東旭, 金鳳洙	鄭文基, 朴萬奎, 李殷相, 元炳旸, 鄭昌熙
1979. 1. 23~1981. 1. 22	李瑄根, 金斗鍾, 黃壽永, 崔熙淳, 任昌淳, 崔永福, 金鎔煥	芮庸海, 金東旭, 任東權, 李惠求	鄭文基, 李殷相, 元炳旸, 鄭昌熙
1981. 2. 26~1983. 2. 25	金元龍, 高柄翹, 金鎔煥, 尹武烈, 李箕永, 李泰寧, 全相運, 李弘燮, 崔永福, 崔熙淳, 黃壽永	金壽根, 尹張燮, 任昌淳, 千惠鳳, 黃壽永	金東旭, 成慶麟, 芮庸海, 柳喜鼎, 李杜鈺, 任東權, 鄭炳浩
1983. 2. 26~1985. 2. 25	金元龍, 尹武烈, 李鈺淳, 金鎔煥, 黃壽永, 李弘燮, 千惠鳳, 任昌淳, 金壽根, 李泰寧, 全相運, 朴永石	千寬宇, 高柄翹, 崔熙淳, 尹張燮, 金壽根, 李泰寧, 全相運	任東權, 李杜鈺, 芮庸海, 成慶麟, 柳喜鼎, 金東旭, 鄭炳浩
			李昌福, 李一球, 任慶彬, 金鳳洙, 元炳旸, 金昌煥, 鄭昌熙

문화재위원 위촉현황(文化財委員委囑現況)

1985年 현재(現在) 문화재위원회위원(文化財委員會委員),
 문화재위원장(文化財委員長) : 주홍섭(奏弘燮)
 부위원장(副委員長) : 김철준(金錫竣) · 이창복(李昌福)

分 科	第1分科	第2分科	第3分科	第4分科	第5分科
分科委員長	尹 張 燮	秦 弘 燮	金 錫 竣	成 慶 麟	李 昌 福
委 員	金 壽 根 金 裕 善 金 正 基 孟 仁 在 鄭 永 鎬 朱 南 哲	任 昌 淳 黃 壽 永 千 惠 惠 李 泰 寧 全 相 運 鄭 良 謨 安 輝 濬 文 明 大	金 元 龍 尹 武 炳 朴 永 錫 崔 永 禧 韓 炳 三 許 善 道	金 東 旭 柳 喜 杜 李 任 東 鄭 炳 浩 芮 庸 海 張 壽 根	李 一 球 金 昌 煥 鄭 昌 熙 任 慶 彬 元 炳 昨 金 熏 洙 宋 志 英

국무원령(國務院令) 第92號(단기(檀紀) 4293年 11月 10日 공포(公布))

문화재보존위원회규정(文化財保存委員會規定)

第1條 ①문화재(文化財)의 보존(保存)에 관(關)한 사항(事項)의 조사(調査) 연구(研究) 심의(審議)하며 이에 관(關)하여 문교부장관(文敎部長官)의 자문(諮問)에 응(應)하게하기 위(爲)하여 문교부(文敎部)에 문화재보존위원회(文化財保存委員會)(이하(以下) 위원회(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항전(項前)에서 문화재(文化財)라 함은 국보(國寶), 고적(古蹟), 명승(名勝),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기타(其他) 이에 준(準)하는 것과 연극(演劇)·음악(音樂)·무용(舞踊)·미술(美術)·공예(工藝)·민속(民俗) 등(等) 유형무형(有形無形)의 문화적소산(文化的所産)으로서 특(特)히 보존(保存)의 필요(必要)가 있다고 인정(認定)되는 것을 말한다.

第2條 ①위원회(委員會)는 위원(委員) 40人 이내(以內)로써 구성(構成)하되 위원장(委員長) 1人과 부위원장(副委員長) 2人을 위원회(委員會)에서 각각(各各) 호선(互選)한다.

②위원(委員)은 학식(學識)과 덕망(德望)이 높은 사계(斯界)의 권위자(權威者) 중(中)에서 문교부장관(文敎部長官)이 위촉(委囑)하며 그 임기(任期)는 4年으로 한다. 단(但) 보궐위원(補闕委員)은 전임자(前任者)의 잔임기간(殘任期間) 중(中) 재임(在任)한다.

③위원장(委員長)과 부위원장(副委員長)의 임기(任期)는 2年으로 한다.

④위원장(委員長)은 회무(會務)를 통리(統理)하며 위원회(委員會)를 대표(代表)하고 그 회의(會議)를 소집(召集)하여 의장(議長)이 된다.

⑤부위원장(副委員長)은 위원장(委員長)을 보좌(補佐)하며 위원장(委員長)이 사고(事故)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委員長)이 지정(指定)하는 부위원장(副委員長)이 그 직무(職務)를 대리(代理)한다.

第3條 위원회(委員會)는 다음 사항(事項)을 심의(審議)한다.

1. 문화재(文化財)의 보존(保存)에 관(關)한 기본적시책(基本的施策)
2. 문화재(文化財)의 보존(保存)에 관(關)한 예산(豫算)의 편성(編成)과 집행(執行)에 대(對)한 기본방침(基本方針)

3. 문화재(文化財)의 지정(指定)과 해제(解除)에 관(關)한 사항(事項)
4. 문화재(文化財)의 수출(輸出) 또는 반출(搬出)의 허가(許可)에 관(關)한 사항(事項)
5. 문화재(文化財)의 현상변경(現狀變更)에 관(關)한 사항(事項)
6. 법령(法令)에 의(依)하여 소관(所管)된 사항(事項)
7. 기타(其他) 필요(必要)하다고 인정(認定)되는 사항(事項)

第4條 위원회(委員會)는 재적위원과반수(在籍委員過半數)의 출석(出席)과 출석위원과반수(出席委員過半數)로써 의결(議決)한다. 단(但) 가부동수(可否同數)인 경우(境遇)에는 의장(議長)이 결정(決定)한다.

第5條 ①위원회(委員會)에 第1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 第2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와 第3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를 둔다.

②第1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는 第3條 각호(各號)의 사항중(事項中) 국보(國寶), 고적(古蹟) 기타(其他) 이에 준(準)하는 역사적(歷史的) 문화재(文化財)에 관(關)한 사항(事項)에 대(對)하여 조사심의(調查審議)한다.

③第2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는 第3條 각호(各號)의 사항중(事項中) 명승(名勝),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기타(其他) 이에 준(準)하는 것에 관(關)한 사항(事項)에 대(對)하여 조사심의(調查審議)한다.

④第3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는 연극(演劇)·음악(音樂)·무용(舞踊)·공예(工藝)와 민속(民俗) 등(等)의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에 관(關)한 사항(事項)에 대(對)하여 조사심의(調查審議)한다.

⑤각분과위원회(各分科委員會)는 필요(必要)에 따라 다른 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와 합동분과위원회(合同分科委員會)를 열 수 있다.

第6條 ①위원회(委員會)의 위원(委員)은 전조(前條) 第1項의 각분과위원회(各分科委員會)의 1에 분속(分屬)하며 그 분과별배속정원(分科別配屬定員)은 문교부장관(文敎部長官)이 정(定)한다.

②각분과위원회(各分科委員會)는 그들의 호선(互選)에 의(依)하여 분과위원장(分科委員長) 1인을 각각(各各) 선출(選出)한다.

③분과위원장(分科委員長)의 임기(任期)와 직무(職務)에 관(關)하여는 第2條 第3項과 第4項의 규정(規定)을 준용(準用)한다.

④전조(前條) 第5項의 규정(規定)에 의(依)한 합동분과위원회(合同分科委員會)에서 호선(互選)한다.

⑤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와 합동분과위원회(合同分科委員會)의 의사(議事)에 관(關)하여는 第4條의 규정(規定)을 준용(準用)한다.

⑥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 또는 합동분과위원회(合同分科委員會)의 의결(議決)로서 위원회전반(委員會全般)에 관련(關聯)되는 사항이외(事項以外)의 것은 이를 위원회(委員會)의 의결(議決)로 본다.

第7條 ①각분과위원회(各分科委員會)에 전문위원약간인(專門委員若干人)을 둔다.

②전문위원(專門委員)은 위원장(委員長)의 추천(推薦)에 의(依)하여 문교부장관(文敎部長官)이 위촉(委囑)한다.

③전문위원(專門委員)은 소속분과위원장(所屬分科委員長)의 명(命)을 받아 위촉(委囑)받은 사항(事項)의 자료수집(資料蒐集), 조사연구(調查研究)와 계획(計劃)의 입안(立案)을 하며 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에 출석(出席)하여 발언(發言)할 수 있다.

第8條 ①위원회(委員會)에 간사(幹事) 약간인(若干人)을 둔다.

②간사(幹事)는 문교부장관(文敎部長官)이 위촉(委囑)하고 위원장(委員長)의 명(命)을 받아 서무(庶務)에 종사(從事)한다.

第9條 위원(委員)과 전문위원(專門委員) 및 간사(幹事)에게는 예산(豫算)의 범위내(範圍內)에서 수당(手當)과 여비(旅費)를 지급(支給)한다.

第10條 문교부(文敎部) 기타(其他) 관계기관(關係機關)의 공무원(公務員)은 본령(本令)에 의(依)한 각종회의(各種會議)에 참석(參席)하여 발언(發言)할 수 있다.

第11條 본령(本令)에 규정(規定)한 것 이외(以外)에 위원회(委員會)의 내부적(內部的) 운영(運營)에 관(關)하여 필요(必要)한 사항(事項)은 문교부장관(文敎部長官)이 정(定)한다.

부 칙(附則)

본령(本令)은 공포(公布)한 날로부터 시행(施行)한다.

본령시행후(本令施行後) 최초(最初)로 위촉(委囑)되는 위원(委員)의 2분지(分之) 1의 임기(任期)는 2年으로 한다.

본령시행후(本令施行後) 최초(最初)로 개최(開催)되는 위원회(委員會)는 문교부장관(文敎部長官)이 이를 소집(召集)한다.

2.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 제정(制定) 후 최초의 문화재위원회규정(文化財委員會規定)

◎ 문화재위원회규정(文化財委員會規定) [1962.3.27 개정(改正). 각령(閣令) 第577號]

개정(改定) 1963. 1. 22 각령(閣令) 第1158號

第1條(목적(目的)) 본령(本令)은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이하(以下) 법(法)이라한다) 第6條의 규정(規定)에 의(依)하여 문화재위원회(文化財保存委員會)(이하(以下) 위원회(委員會)라 한다)의 조직(組織)과 운영(運營)등(等)에 관(關)한 사항(事項)을 규정(規定)함을 목적(目的)으로 한다.

第2條(구성(構成)) ①위원회(委員會)는 30人 이내(以內)의 위원(委員)으로써 구성(構成)한다.

②위원(委員)은 학식(學識)과 덕망(德望)이 높은 사계(斯界)의 권위자(權威者) 중(中)에서 문화재관리국장(文化財管理局長)의 제청(提請)에 의(依)하여 문교부장관(文敎部長官)이 위촉(委囑)한다.

③위원(委員)의 임기(任期)는 4年으로 한다. 단(但) 보궐위원(補闕委員)의 임기(任期)는 전임자(前任者)의 잔임기간(殘任期間)으로 한다.

第3條(위원장(委員長)과 부위원장(副委員長)) ①위원회(委員會)에 위원장(委員長) 1人和 부위원장(副委員長) 2人을 둔다.

②위원장(委員長)과 부위원장(副委員長)은 위원회(委員會)에서 각각(各各) 호선(互選)하되 임기(任期)는 2年으로 한다.

④위원장(委員長)은 회무(會務)를 통리(統理)하며 위원회(委員會)를 대표(代表)하고 회의(會議)를 소집(召集)하여 그 의장(議長)이 된다.

⑤부위원장(副委員長)은 위원장(委員長)을 보좌(補佐)하며 위원장(委員長)이 사고(事故)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委員長)이 지정(指定)한 부위원장(副委員長)이 그 직무(職務)를 대행(代行)한다.

第4條(의결사항(議決事項)) 위원회(委員會)는 법(法) 第4條에 규정(規定)된 사항(事項)에 다음의 사항(事項)을 심의결정(審議決定)한다.

1. 지정(指定) 또는 가지정문화재(假指定文化財)의 보존(保存)에 관(關)한 기본적시책(基本的施策)
2. 지정(指定) 또는 가지정문화재(假指定文化財)의 보존(保存)에 관(關)한 예산(豫算)의 편성(編成)과 집행(執行)에 대(對)한 기본방침(基本方針)
3. 기타(其他) 문교부장관(文敎部長官)이 부의(附議)하는 사항(事項)

第5條(의결정족수(議決定足數)) 위원회(委員會) 회의(會議)는 다른 법령(法令)에 특별(特別)한 규정(規定)이 있는 경우(境遇)를 제외(除外)하고는 재적위원(在積委員) 과반수(過半數)의 출석(出席)과 출석위원(出席委員) 과반수(過半數)의 찬성으로써 의결(議決)한다. 가부동수(可否同數)인 경우(境遇)에는 의장(議長)이 결정(決定)한다.

第6條(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의 조직(組織)) ①법(法) 第5條의 규정(規定)에 의(依)한 각분과위원회(各分科委員會)는 위원회(委員會)의 위원(委員)으로서 구성(構成)하되 그 위원(委員)의 분과별(分科別)·배속정원(配屬定員)은 문교부장관(文敎部長官)이 정(定)한다.

②각분과위원회(各分科委員會)는 그들의 호선(互選)에 의(依)하여 분과위원장(分科委員長) 1人을 선출(選出)한다.

③분과위원장(分科委員長)의 임기(任期)와 직무(職務)에 관(關)하여는 第3條 第2項 및 第3項의 규정(規定)을 준용(準用)한다.

④분과위원장(分科委員長)이 사고(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가 지정(指定)한 분과위원(分科委員)이 그 직무(職務)를 대행(代行)한다.

第7條(합동분과회의(合同分科會議)) ①각분과위원회(各分科委員會)는 필요(必要)에 따라 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와 합동분과회의(合同分科會議)를 열 수 있다.

②합동분과회의(合同分科會議)는 당해(當該) 각분과위원장(各分科委員長)이 소집(召集)하되 그 의장(議長)은 합동분과회의(合同分科會議)에서 호선(互選)한다.

第8條(분과위원회회의등(分科委員會會議等)의 의결정족수(議決定足數) 및 의결(議決)의 효력(效力)) ①분과위원회회의(分科委員會會議)와 합동분과회의(合同分科會議)의 의사(議事)에 관(關)하여는 第 條의 규정(規程)을 준용(準用)한다.

②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 또는 합동분과회의(合同分科會議)의 의결(議決)로서 위원회전반(委員會全般)에 관련(關聯)되는 사항이외(事項以外)의 것은 이를 위원회(委員會)의 의결(議決)로 한다.

第9條(전문위원(專門委員)) ①각분과위원회(各分科委員會)에 30人 이내(以內)의 전문위원(專門人員)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專門委員)은 사계(斯系)의 전문가중(專門家中)에서 문화재관리국장(文化財管理局長)의 제청(提請)에 의(依)하여 문교부장관(文敎部長官)이 위촉(委囑)한다.

③전문위원(專門委員)은 소속분과위원장(所屬分科委員長)의 명(命)을 받아 위촉(委囑)받은 사항(事項)의 자료수집(資料蒐集) 조사연구(調查研究)와 계획(計劃)의 입안(立案)을 하며 소속분과위원회(所屬分科委員會)에 출석(出席)하여 발언(發言)할 수 있다.

第10條(간사등(幹事等)) ①위원회(委員會)에 간사(幹事) 1人和 서기(書記) 약간인(若干人)을 둔다.

②간사(幹事)와 서기(書記)는 문화재관리국장(文化財管理局長)이 그 소속직원(所屬職員) 중(中)에서 명(命)한다.

③간사(幹事)는 위원회회의(委員會會議)의 의사(議事)를 정리(整理)하며 서무(庶務)를 담당(擔當)하고 서기(書記)는 간사(幹事)를 보조(補助)한다.

第11條(수당(手當)과 여비(旅費)) 위원(委員)과 전문위원(專門委員)에게는 예산(豫算)의 범위내(範圍內)에서 수당(手當)과 여비(旅費)를 지급(支給)한다. 그러나 공무원(公務員)인 위원(委員)과 전문위원(專門委員)에게는 수당(手當)을 지급(支給)하지 아니한다.

第12條(관계자(關係者)의 의견청취(意見聽取)) 위원회(委員會)와 각분과위원회(各分科委員會) 또는 합동분과위원회(合同分科委員會)를 필요(必要)하다고 인정(認定)할 때에는 관계공무원(關係公務員)이나 기타(其他)의 자(者)를 회의(會議)에 출석(出席)하게 하여 그 의견(意見)을 청취(聽取)할 수 있다.

第13條(위임사항(委任事項)) 본회(本會)에 규정(規定)된 것 외(外)에 위원회(委員會)의 운영(運營)에 관(關)하여 필요(必要)한 사항(事項)은 위원회(委員會)의 의결(議決)을 거쳐 위원장(委員長)이 정(定)한다.

①(시행일(施行日)) 본령(本令)은 공포(公布)한 날로부터 시행(施行)한다.

②(폐지법령(廢止法令)) 국무원령(國務院令) 第92號 문화재보존위원회규정(文化財保存委員會規定)은 이를 폐지(廢止)한다.

③(경과조치(經過措置)) 본회시행후(本會施行後) 최초(最初)로 개최(開催)되는 위원회(委員會) 또는 위원(委員)의 임기만료후(任期滿了後) 최초(最初)로 개최(開催)되는 위원회(委員會)의 회의(會議)는 문교부장관(文敎部長官)이 이를 소집(召集)한다.

부 칙(附 則)(1983. 1. 22)

이 영(令)은 공포(公布)한 날로부터 시행(施行)한다.

3.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이 문교부(文敎部)에서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로 이관된 후 개정된 문화재 위원회 규정

개정 1962. 3. 27 각 령 제 577호

개정 1963. 1. 27. 각 령 제1158호

개정 1969. 1. 8. 대통령령 제 3714호

개정 1970. 2. 7. 대통령령 제 4577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써 구성한다.

②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계의 권위자 중에서 문화공보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둔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결사항) 위원회는 법 제4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에 관한 기본적 시책

2.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관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기본방침
3. 문화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기타 문화공보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의결 정족수) 위원회회의의 의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조(분과위원회의 조직)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이 분과별 배속 정원은 문화공보부장관이 정한다.

②각 분과위원회는 그 호선에 의하여 분과위원장 1인을 선출한다.

③분과위원장의 임기와 직무에 관하여는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분과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가 지정한 분과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합동분과회의) ①각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다른 분과위원회와 합동분과 회의를 열 수 있다.

②합동분과회의는 당해 각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되 그 의장은 합동분과회의에서 호선한다.

제8조(분과위원회회의 등의 의결정족수 및 의결의 효력) ①분과위원회회의와 합동분과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회의의 의결로서 위원회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 이외의 것은 이를 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제9조(전문위원) ①각 분과위원회에 30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사계의 전문가 중에서 문화공보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소속분과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촉받은 사항의 자료수집 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며 소속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문화공보부장관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명한다.

③간사는 위원회 회의의 의사를 정리하며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그러나 공무원인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기타의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위임사항)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국무령 제92호 문화재보존위원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본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 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는 문화공보부장관이 이를 소집한다.

부 칙(1963. 1. 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9. 1. 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9. 1. 8 대통령령 제 3714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위원회위원 및 전문위원의 임기는 그 위촉 당시에 정하여진 임기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그 임기를 종료한다.

③(동 전)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 또는 위원회 임기만료 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는 문화공보부장관이 이를 소집한다.

부 칙(1970. 2. 7 대통령령 제 457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1985年 4月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가 5개 분과로 확대개편되기 이전의 문화재위원회규정

[1962년 3월 27일 각(閣) 령(令) 第577號]

- 개정 1963. 1. 22. 각(閣) 령(令) 第1158號
1969. 1. 8. 대통령령(大統領令) 第3714號
1970. 2. 7. 대통령령(大統領令) 第4577號
1971. 2. 17. 대통령령(大統領令) 第5534號
1971. 5. 18. 대통령령(大統領令) 第5639號
1973. 9. 15. 대통령령(大統領令) 第6861號
1983. 5. 30. 대통령령(大統領令) 第11139號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 이라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계의 권위자 중에서 문화재관리국장의 제청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둔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사항) ①위원회는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관한 기본적 시책
2.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관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기본방침
3. 문화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국가가 매입할 문화재의 평가
5. 발견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상금액
6. 기타 문화공보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 제3호에서 "문화재의 보급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문화재의 공개, 전시 또는 문화재를 소개·안내하는 안내책자·안내홀다·사진엽서·필립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5조(의결정족수) 위원회회의의 의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조 2(분과위원회 설치 등) ①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에 제1분과위원회·제2분과위원회 및 제3분과위원회를 둔다.

②제1분과위원회는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유형문화재와 동조 동항 제3호의 기념물 중 사적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제2분과위원회는 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무형문화재와 동조 동항 제4호의 민속자료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제3분과위원회는 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기념물(사적지를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분과위원회의 조직) ①각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의 분과별 배속, 정원은 문화공보부장관이 정한다.

②각 분과위원회는 그 호선에 의하여 분과위원장 1인을 선출한다.

③분과위원장의 임기와 직무에 관하여는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분과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가 지정한 분과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합동분과회의) ①각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른 분과위원회와 합동분과회의를 열 수 있다.

②합동분과회의는 당해 각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되, 그 의장은 합동분과회의에서 호선한다.

제8조(분과위원회회의 등의 의결 정족수 및 의결의 효력) ①분과위원회회의와 합동분과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회의의 의결로서 위원회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 이외의 것은 이를 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제9조(전문위원) ①각 분과위원회에 30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사계의 전문가 중에서 문화재관리국장의 제청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소속 분과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촉받은 사항의 자료수집·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며 소속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문화공보부장관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명한다.

③간사는 위원회회의의 의사를 정리하며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12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기타의 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위임사항)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1. 2. 17 대령 553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1. 5. 13 대령 563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3. 9. 15 대령 686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3. 5. 30 대령 11139)

이 영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1985년 4월 26일 5개분과(個分科)로 개편된 문화재위원회규정(文化財委員會規定)

문화재위원회규정

[1962년 3월 27일 각(閣) 령(令) 第577號]

개정 1963. 1. 22. 각(閣) 령(令) 第1158號

1969. 1. 8. 대통령령(大統領令) 第3714號

1970. 2. 7. 대통령령(大統領令) 第4577號

1971. 2. 17. 대통령령(大統領令) 第5534號

1971. 5. 18. 대통령령(大統領令) 第5639號

1973. 9. 15. 대통령령(大統領令) 第6861號

1983. 5. 30. 대통령령(大統領令) 第11139號

1985. 4. 26. 대통령령(大統領令) 第11690號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계의 권위자 중에서 문화재관리국장의 제청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둔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사항) ①위원회는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과 박물관법과 전통건조물보존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정 또는 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관한 기본적 시책

2. 문화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국가가 매입할 문화재의 평가

4. 발견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상금액

5. 기타 문화공보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의결정족수) 위원회회의의 의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조 2(분과위원회 설치 등) ①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제1분과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제5분과위원회 및 박물관분과위원회를 둔다.

②제1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유형문화재 중 건조물 및 동조 동향 제4호의 민속자료 중 가옥에 관한 사항
2. 전통 건조물보존법 제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 대상 전통 건조물 또는 전통 건조물 보존 지구의 지정 및 그 해제, 동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대상 전통 건조물 보호구역의 보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③ 제2분과위원회는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유형문화재(건조물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④ 제3분과위원회는 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기념물 중 사적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⑤ 제4분과위원회는 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무형문화재와 동조 동향 제4호의 민속자료(가옥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⑥ 제5분과위원회는 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기념물(사적지를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⑦ 박물관분과위원회는 박물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의 설치 운영 및 박물관 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분과위원회의 조직) ①각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회의 분과별 배속, 정원은 문화공보부장관이 정한다.

②각 분과위원회는 그 호선에 의하여 분과위원장 1인을 선출한다.

③분과위원장의 임기와 직무에 관하여는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분과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가 지정한 분과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합동분과회의) ①각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다른 분과위원회와 합동분과회의를 열 수 있다.

②합동분과회의는 당해 각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되, 그 의장은 합동분과회의에서 호선한다.

제8조(분과위원회회의 등의 의결 정족수 및 의결의 효력) ①분과위원회와 합동분과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회의의 의결로서 위원회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 이외의 것은 이를 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제9조(전문위원) ①위원회에 120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되 각 분과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수는 문화공보부장관이 정한다.

②전문위원은 사계의 전문가 중에서 문화재관리국장의 제청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소속분과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촉받은 사항의 자료수집·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며 소속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 ①위원회 및 각분과위원회에 각각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문화공보부장관이 문화공보부 또는 문화재관리국 소관과 직원 중에서 명한다.

③간사는 해당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개정 85. 4. 26)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12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기타의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위임사항)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1. 2. 17 대령 553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1. 5. 13. 대령 563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3. 9. 15 대령 686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3. 5. 30 대령 11139)

이 영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5. 4. 26 대령 1169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6.25 때 문화재 피해 사항표
(1955년 6월 30일 현재)

시 도	저 경 문 화 재				일 반 문 화 재				계			
	전소 건과	중과	소과	계	전소 건과	중과	소과	계	전소 건과	중과	소과	계
서울	3	4	4	11	2			2	5	4	4	13
경기		14	4	18	5	4		9	5	18	4	27
충북		2		2	4	5		9	4	7		11
충남		7	5	12	5	10	16	31	5	7	21	43
전북			8	8	15	6	4	25	15	6	12	33
전남	7	1		8	2			2	9	1		10
경북	4	4	9	17		2		2	4	6	9	19
경남	1	1	4	6	17	11		28	18	12	4	34
강원	4		2	6	7	10		17	11	10	2	23
제주							2	2			2	2
계	19	33	36	88	57	48	22	127	76	81	58	215

(1955년 6월 30일 현재)